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46966 대여금
원 고 ○○○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1. ○○○ (*****-1*****)
2. ○○○ (*****-2*****)
피고2의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피고2.의 명의로 광명시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2) 피고들의 채권자인 갑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단572)를 제기하여 2010. 3.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갑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갑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0타경000000호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3)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2. 17.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자, 다급해진 피고들은 을을 통해 원고에게 경매취하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병 법무사의 계좌로 2011. 2. 24. 2,400만원, 2011. 2. 25. 2,970만원 합계 5,37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4) 원고의 도움으로 자금을 확보한 피고들은 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2011. 2. 24. 위 경매법원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2011. 2. 25. 갑에

대한 대여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51,158,951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제00000호)하였고, 같은 날 갑을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00000)를 제기하였다. 피고2.는 2011. 6. 10.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무변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이후 갑은 2011. 7.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24. 및 25. 피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5,370만 원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2.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1.의 주장

(1) 주장요지

피고1.은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AAA자원'이라는 상호로 철거 등 업무를 하는 을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대의 철거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그 이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를 통해 을로부터 송금받은 5,370만 원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기하여 이익배당을 미리 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 주장은 원고 내지 을과 피고1.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우선 동업약정에 관한 주요 증거인 을 5호증(공동사업약정서 사본, 이 하 '이 사건 서증'이라고 한다)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응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1.은 자신은 사본만 가지고 있고 원본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와 이 사건 서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로서 피고1.이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AAA자원의 고무인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면서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을 다툰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1.은 이 사건 서증의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5호증의 1, 갑 21~2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제출한 을 3호증(계약해지서 사본)은 갑 5호증의 1과 동일한 문건임에도 갑 5호증의 1에는 없는 피고1.의 서명이 입회인 자격으로 추가, 기재되어 있는데, 서면에 서명 내지

날인을 한 주식회사 BBBB, 을, 정이 모두 간인한 데 반해 피고1.의 간인만 빠져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의 1의 원본에도 피고1.의 서명 및 간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1.이 위 계약해지서의 사본에 자신의 서명을 임의로 추가하여 을 3호 증으로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위와 같은 까닭에 이 사건 서증의 원본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게다가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서증의 원본을 모두 제출하면서 을 5호증(공동사업약정서 사본)은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AAA자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을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서증에 날인된 AAA자원의 고무인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나 자신은 고무인을 직접 날인한 바 없고, 다만 고무인을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였으므로 누군가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의심한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을 7호증의 1, 2(영수증 사본)를 원고가 제출한 원본과 대조하여 보면 을호 증에만 AAA자원의 고무인이 추가되어 있어서 을의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3, 11~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무의 증언만으로는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을 11, 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무의 증언에 의하면, 을은 피고1.의 소개로 2011. 2. 22. 무와 매매대금 2억 원에 폐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을은 원고 명의로 된 폐고철매매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을 자신과 피고1.을 내세운 사실, 원고와 피고1.은 2011. 2. 24. 자신들의 명의로 된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무에게 교부하고 확약사항이 불이행될 경우에는 피고1.도 연대보증인으로서 매매대금의 2배인 4억 원을 책임지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무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1.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약정 일은 2011. 2. 24.이라는 것인데, 사업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약정일 무렵에 합계 5,370만 원을 수익금의 일부로 우선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2011. 1.경 기로부터 폐고철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무에게 2억 원에 매각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나마 무가 2011. 3.경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는 2011. 6. 23. 매매대금 상당액을 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원고에게 위 폐고철매매로 인한 수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내지 을과 피고 1.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2.의 주장

(1) 주장요지

피고2.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나 을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2.가 남편인 피고1.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여금의 공동차용인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설령 피고2.를 공동차용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피고2.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었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금전차용 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2.는 민법 제832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인 피고1.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지혜